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1.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귀 업체에서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변경 지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따라 품목허가 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 뒷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2020. . . . ↑ 변경일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변경지시 해당 항목 기재	(의약품정책과- 호, 2020. . . .) ↑ 변경지시(행정지시)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 (참고)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제12호)

나. 품목허가증(또는 신고필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통일조정안)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관리할 것

2. 동 기간 내에 상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 허가(신고) 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공시/공고/알림 > 의약품허가·승인 > 변경지시' 참조

- 붙임 1.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시타글립틴인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통일조정 대상업체



심사관

정희정

약무사무관

채주영

허가총괄팀장

전결 2020. 3. 18.

오정원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3541

(2020. 3. 18.)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309

팩스번호 043-719-2300

/ jhj0213@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